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2826

제안연월일: 2025년 6월 27일 제 안 자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근거조항 오류를 정정하고, 상위법령에 맞게 조무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문의 근거조항 수정 및 용어 정비(안 제5조제5항).
-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(안 제8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안 제5조제5항 중 "제5조제3항"을 "제5조제4항"으로, "없는 한"을 "없으면"으로 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"학교 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"을 "관련 프로그램"으로, "연계하여 야 한다"를 "연계할 수 있다"로 한다.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〈 수정안 조문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①(생략)	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①(현행과같음)	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①(개정안과 같음)
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	②	¹⁰ ② (개정안과 같음)
의한다. 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	1	1. (개정안과 같음)
획에 따른 매년 <u>시행</u> <u>계획</u> 수립에 관한 <u>사</u> <u>항</u>	학 교폭력 예방대책(이 하 "예방대책"이라 한 다) 사항(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)	
2. 법 제10조제3항에 따 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 여 교육감이 요청하 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	2. 전년도 예방대책에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	2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법 제10조제5항에 따	3. (개정안과 같음)

3. (생략) <신 설>

③ (생략)

④ 교육감과 서울특 별시경찰청장은 지역 위원회의 제5조제3항 에 따른 요청을 받았 을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 성 등) ① 지역위원 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④ 위원의 임기는 2 년(당연직은 재임기 라 교육감이 지정하 는 상담・치료・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4. (개정안과 같음)

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 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④ (개정안과 같음)

-- 없는 한 ------- 협조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 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 성 등) ① -----

----- <u>이</u>내의 <u>위원으</u>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

4) -----(당연직 위원의 임기

③ 지역위원회는 법 ③ (개정안과 같음)

----- 제5조제4항

--- 없으면 -----

성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간)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 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하다.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제8조(청소년시설 등 저 연계 지원) ① <u>「학</u> 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| 제15조제 2항 규정에 의한 단 체의 장은 학교폭력 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 으로 <u>연계할 수 있다</u>.

<u>는</u>	해당	직위	재임	<u>] 7]</u>
<u>간</u> .	으로	한다).	으로	하
며,	두 ㅊ	<u> 례</u> -		
		전임위	원의	

연계 지원) ① 「학 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|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-----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 램------- 연계하여야 한다.

제8조(청소년시설 등
연계 지원) ①
<u>관련</u>
<u>프로그램</u>
여게하 수 이다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관한 필요한" 을 "필요한"으로 한다.

(목적)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뜻한"을 "뜻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「초·중 등교육법」제2조"를 "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"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"를 "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"로, "단체 또는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제29조"를 "단체 또는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제29조"를 "단체 또는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제29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"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"를 "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"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"시행계획"을 "학교폭력 예방대책(이하 "예방대책"이라 한다)"으로, "사항"을 "사항(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)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

-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5조제3항"을 "제5조제4항"으로, "협조할 수 있다" 를 "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"로 한다.
- 제6조제1항 중 "이내"를 "이내의 위원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(당연직은 재임기간)으로 하며,"를 "(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)으로 하며, 두 차례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전임 위원회"를 "전임위원의"로 한다.
- 제8조제1항 중 "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"을 "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1항"을 "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조</u> 이 조례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	<u>제1조(목적)</u>
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, 가해학	<u>필요한</u>
생의 선도·교육을 지원하여 건전 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	
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 제2조(정의)
용어의 <u>뜻한</u>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	뜻은 1. (현행과 같음) 2 「초·중등교육법」
전환 조·중등교육합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	<u>제2조</u>
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	
3. ~ 5. (생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6. "청소년시설 등"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「청소년복지 지원 법」제29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마하다	6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단체 또는「청소년복지 지원 법」 제29조
체를 말한다. 7. "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	7

"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의 프로 그램을 말한다.

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(생 략)

-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.
- 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 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 · 2.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 치료 • 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 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 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3. (생략) <신 설>

	「학교	밖	청소년	지원에
<u>관한</u>	법률」	제2	<u> 조제3호</u>	

(현행과 같음)

- ---- 학교 폭력 예방대책(이하 "예방대책" 이라 한다) --- 사항(이 경우 예 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 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)
- 실적에 관한 사항
- 3.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 이 지정하는 상담・치료・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
-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

③ (생략)

④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<u>협조할수</u> 있다.

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<u>이내</u>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.

② • ③ (생 략)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(당연직은 재임기간)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(생략)

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
<u>한다.</u>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⑤</u>
<u>제5조제4항</u>
협조하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
<u>이내의 위원으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④(당연직 위원
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
<u>로 한다)으로 하며, 두 차례</u>
<u>전</u>
<u>임위원의</u>
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
<u> </u>
<u>률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</u>